

대학IR센터운영규정

2020.05.01.제정 2021.08.01.일부개정

<미래전략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 운영계획, 대내외 정책 변경에 따른 대학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대학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분석하여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학IR(Institutional Research)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데이터 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 및 운영
3. 대학의 유관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체계화 추진
4. 고등교육 관련 정형·비정형 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5. 교육여건, 대내외 평가 주요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관리
6.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핵심지표 및 전략과제 상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정책·제도·재정운영 등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대학운영을 위한 근거 제시
9. 대학 각종 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10. 대학종합만족도 조사 및 수요도 조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8.1.)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 기획부처장, 대학IR센터장, 기획평가팀장과 임명직 위원 6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

③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8.1.)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2.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8.1.)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기타사항)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